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 | |
|----------|------|
| 의안 번호 | 3181 |
|----------|------|

제안년월일 : 2022년 4월 8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주 문

- 서울대공원은 스마트주차장 조성 사업을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대공원 주차장이 수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및 서울대공원의 주차장에서 기존까지 해오던 방식인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최초로 토지의 공시지가로 예정가를 산정하였음.

그동안 서울대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입찰의 예정가격을 정하고, 최고가 입찰자에게 사용수익허가권한을 부여 하였으나 최초로 토지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예정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이전 연도에 비해 사용료가 약 7억원 낮아졌고 향후 대형주차장 사용료는 계약기간 5년간 약 35억원 상당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입찰공고 참가자격으로 '정보보안 인증', '위치기반서비스', '스마트주차장 시스템 구축' 등 기존에 없던 조건을 요구했으며, 주차장 조성비용 또한 낙찰자 부담으로 명시한 것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제한적인 공고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일반경쟁입찰에서 1개 업체만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볼 때 특정 민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입찰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서울대공원 주차장이 수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울시와 서울대공원이 해왔던 방식대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최초로 토지의 공시지가로만 예정가를 산정해 사용수익허가한 근거가 부적정하다 판단되고, 이로 인해 대형주차장 사용료에서 향후 연간 약 7억원, 계약기간 동안 총 약 35억원 상당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업체에 의도적으로 특혜를 준 소지의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가 필요함.

| |
|--|
| 기존계약: 2018. 8. 30. ~ 2021. 8. 29. ※2020년 사용료 (29억1백만원) 신규계약: 2021. 8. 30. ~ 2026. 8. 29. ※2021년 사용료 (22억5백만원) |
|--|

나. 입찰공고문의 참가자격에 따르면 ‘스마트주차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조건’과 ‘정보관리에 대한 정보보안 인증(ISO27001 또는 ISMP-P) 획득’ 조건, ‘사업자등록증 상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조건이 포함되었으며, 이와 함께 주차장 조성비용을 낙찰자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제한적인 공고로 판단됨.

특히 주차장개선사업의 시설투자를 입찰조건으로 하면서 5년간의 허가기간을 보장해 주었으나, 낙찰 후 5일 이내 주차장개선사업의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촉박한 시간제한을 두는 등 특정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입찰 가능성 여부에 대한 공익 감사가 필요함.

다. 또한 시민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주차장 주차요금을 100% 인상하려고 계획하는 것은 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와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빅테크 플랫폼 특정 업체의 반독점 행위를 묵과하는 행태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 주차장 플랫폼 서비스의 계약해지나 종료 시 시설물 소유와 시설물 사용에 대한 조건 등 명확한 지침과 그에 대한 특정 계약이 없이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서’만 발급한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 됨.

이와 같이 서울대공원의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은 빅테크 플랫폼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면밀한 공익감사가 필요하여 감사를 청구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이 송 처 : 감사원
- 다. 기 타 : 없음

4. 첨 부 :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1부.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지난 2021년 우리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의혹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로 명백히 밝히지 못한 의혹들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해줄 것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대공원 주차장이 수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울시와 서울대공원이 해왔던 방식대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최초로 토지의 공시지가로만 예정가를 산정해 사용수익허가한 근거가 부적정하다 판단되고, 이로 인해 대형주차장 사용료에서 향후 연간 약 7억원, 계약기간 동안 총 약 35억원 상당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업체에 의도적으로 특혜를 준 소지의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입찰공고문의 참가자격에 따르면 ‘스마트주차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조건’과 ‘정보관리에 대한 정보보안 인증(ISO27001 또는 ISMP-P) 획득’ 조건, ‘사업자등록증 상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자격이 강화되었으며, 이와 함께 주차장개선사업의 시설투자를 입찰조건으로 하여 5년간 허가기간을 보장해주었으며, 주차장 조성비용 또한 낙찰자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제한적인 공고로 판단됩니다.

특히 낙찰 후 5일 이내 주차장개선사업의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낙찰을 취소하도록 하여 촉박한 시간제한과 강화된 조건을 둔 것이 특정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입찰이 아닌지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시민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주차장 주차요금을 100% 인상하려고 계획하는 것은 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와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빅테크 플랫폼 특정 업체의 반독점 행위를 묵과하는 행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주차장 플랫폼 서비스의 계약해지나 종료 시, 시설물 소유와 시설물 사용에 대한 조건 등 명확한 지침과 그에 대한 특정 계약이 없이,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서’만 발급한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되고 있어 서울대공원의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이 빅테크 플랫폼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판단돼 면밀한 공익감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러한 절차적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항을 명백히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사용수익허가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행정사무의 공정성을 확립함은 물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원의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4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